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140

제출년월일: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심리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나. 조례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 -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시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시무의 기준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민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· 양성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사무형 위탁)
- 수탁기관
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 - 「고등교육법」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
- 소 재 지 : 3개 권역 선정(동북권, 서남권, 동남권)
 - ※ 권역별 1개구 선정

구 분	자 치 구
동북권	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, 성북구, 중랑구
서북권	마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서대문, 종로, 중구
서남권	강서구, 구로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, 영등포, 양천구
동남권	강남구, 강동구, 광진구, 서초구, 성동구, 송파구

출처: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09), 「서울시 저소득시민 의료서비스이용및 공공병원 병상수급에 관한 분석」

○ 규 모

- 인력구성 : 각 센터별 5명 [센터장 1(비상근), 팀장 1, 팀원 3]

- 시설규모 : 면적 165m²이상

구 분	총계	사무실	상담검사실	대기실	교육실
설치수(실)	8	1	5	1	1
면적	$165 \mathrm{m}^2$	$14 \mathrm{m}^2$	$15\text{m}^2 \times 5 = 75\text{m}^2$	$36\mathrm{m}^2$	$40 \mathrm{m}^2$
시설기능		직원근무	개인상담, 심리검사 등	힐링제공	집단교육 프로그램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 이내(2018. 협약일 ~ 2020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1,003,878천원(2018년 예산 편성 중)

○ 산출근거

항목	예산액 (천원)	산출근거		
총 액		1,003,878,000원		
인건비 (529,303)	인건비 (529,303)	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 15명 인건비 센터장 1,093,000*3명*12개월=39,348,000원 팀장 4,000,000*3명*12개월=144,000,000원 팀원 3,300,000*6명*12개월=237,600,000원 행정인력 2,636,000*3명*12개월=94,896,000원 17년 인건비*2.6%(전년대비 상승률)=13,459,000원 		
사업비 (474,575)	회의비 (11,000)	- 전문가 지문위원회의: 100,000×6명×6회=3,600,000원 - 자문회의 진행경비: 70,000×10명×3회=2,100,000원 - 직원 실무자회의: 7,000×10명×3회=210,000원 - 사례회의비 등 5,090,000원		
	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 (413,901)	- 각종 사무용품 및 인쇄비 등 8,741,000원 - 개인상담 등 175,307,000원 - 소집단 상담 및 교육 120,000,000원 - 대집단 상담 및 교육 등 : 109,853,000원		
	홍보비 등 (49,674)	- 홈페이지 및 SNS 구축운영 : 15,000,000원 - 홍보물 및 브로슈어 제작 : 25,674,000원 -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: 3,000,000원 - 기타 진행경비 : 6,000,000원		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조직담당관 2017. 9. 20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 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육·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,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-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 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-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 - 2018년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신규 공모계획수립 (보건의료정책과 2017, 8, 31.)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김종금 (☎ 2133 - 7549)